

공정거래법규 및 필수법규 위반 인사제재 규정

Rev.0

배포부서	전 부서	배포일	2024.03.04
------	------	-----	------------

	공정거래법규 및 필수법규 위반 인사제재 규정 매뉴얼	제 · 개정일자	2024.03.04
	01. 목 차	Rev	0

0.1 목차	2
0.2 개정이력	3
1. 총칙	4
2. 부칙	8

	공정거래법규 및 필수법규 위반 인사제재 규정 메뉴얼	제 · 개정일자	2024.03.04
	02. 개정이력	Rev	0

제·개정 차수	제 · 개정일	제·개정	제정내용	비고
0	2024.03.04	제정		

	공정거래법규 및 필수법규 위반 인사제재 규정 메뉴얼	제 · 개정일자	2024.03.04
	1. 총 칙	Rev	0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인사제재 규정(이하 ‘인사제재규정’)은 (주)만보중공업(이하 ‘회사’라 한다)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의 투명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고, 더 나아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법규 위반 행위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에 목적이 있다.

제2조(기본 원칙) 인사제재 규정은 회사 임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관련 일체의 행위에 적용되며, 본 규정에 반하는 회사의 방침 또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인사제재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.

제3조(용어 정의) 인사제재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) “인사제재”란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실시함으로써,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조치이다.
- 2) “법 위반 행위”는 CP운영팀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판단한 행위로서, 행정기관, 사법기관, 기타 제3자에 의한 문제 제기 및 판단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CP운영팀이 직접 검토하여 법 위반 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- 3) “임직원”은 고용 형태나 종류와 무관하게 회사와 고용 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뜻한다.
- 4) “자율준수관리자”란 회사의 CP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.
- 5) “CP운영팀”은 CP 운영 실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해당한다.
- 6) “자율준수협의회”란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, 조치, 권고, 자문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.

	공정거래법규 및 필수법규 위반 인사제재 규정 메뉴얼	제 · 개정일자	2024.03.04
	1. 총 칙	Rev	0

제4조(적용 범위)

- 1) 회사 내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공통사항이며, 협력업체 또는 관계사에 파견되어 사실상 당사의 관리 및 책임 아래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.
- 2)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임직원들에 대하여 자율 준수협의회에서 심의를 걸쳐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 규정에서 정하는 제재 기준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.

제5조(제재의 원칙)

- 1) 임직원이 직무상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2) 자율 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,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임직원에게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취한다.

제6조(제재의 종류) 사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과실 정도	제재 종류		비고
	담당자	부서장	
상 (上)	징계	경고	- 중대 법규*를 위반한 경우 * 중대 법규: 부당한 대금결정, 부당감액, 부당위탁 취소 및 변경, 부당반품, 기술탈취 등 - 동일한 위반을 2 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
중 (中)	경고	주의	- 계약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계약서발급이 30일이상 지연된 경우 - 위반수준이 상, 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하 (下)	주의	주의	- 경미하거나 자진 시정이 가능한 경우 . 계약서 발급이 30 일미만 지연된 경우 . 계약서의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. 지연이자 지급 등 자진 시정이 가능한 경우 등 - 법 위반으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- 경영여건 등 특별히 고려할 이유가 있는 경우 등

	공정거래법규 및 필수법규 위반 인사제재 규정 매뉴얼	제 · 개정일자	2024.03.04
	1. 총 칙	Rev	0

제7조(제재의 절차 및 심사)

- 1) 자율 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제보내용에 대하여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경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조사팀 구성 여부를 결정한다.
- 2) 자율 준수 관리자는 조사팀의 조사 활동 결과 보고서에 따라 법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징계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,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과 인사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.
- 3) 자율 준수 관리자는 제재 조치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감경대상)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감경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.

- 1)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법규 위반의 자발적 인정 및 반성이 있는 경우
- 2) 신입사원 혹은 해당 업무 미숙련자의 업무 미숙인 경우
- 3) 자율준수 노력, 외부 법률 상담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위반한 경우
- 4) 조사 전 자율적으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시정한 경우
- 5) 기타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등 점점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감경이 필요한 경우

제9조(보고 및 문서 관리)

- 1) 인사제재 시스템 운영 현황 및 결과를 년2회 이상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2) 인사제재와 관련된 문건은 자율 준수 관리자 책임 하에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.

	공정거래법규 및 필수법규 위반 인사제재 규정 메뉴얼	제 · 개정일자	2024.03.04
	2. 부 칙	Rev	0

제2장 부 칙

1) 이 규정은 2024년 03월 4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[별표 1] 인사제재 유형과 양정기준

법위반 정도	제재		비고
	담당자	부서장	
상	징계	경고	- 중대 법규*를 위반한 경우 * 중대 법규: 부당한 대금결정, 부당감액, 부당위탁취소 및 변경, 부당반품, 기술탈취 등 - 동일한 위반을 2 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
중	경고	주의	- 계약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계약서 발급이 30 일 이상 지연된 경우 - 위반수준이 상, 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하	주의	주의	- 경미하거나 자진 시정이 가능한 경우 . 계약서 발급이 30 일 미만 지연된 경우 . 계약서의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. 지연이자 지급 등 자진 시정이 가능한 경우 등 - 법 위반으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- 경영여건 등 특별히 고려할 이유가 있는 경우 등

	공정거래법규 및 필수법규 위반 인사제재 규정 메뉴얼	제 · 개정일자	2024.03.04
	2. 부 칙	Rev	0

[별표 2] 양정가중 및 감경사항

구 분	내 용
가중대상	- 유사 법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경우 - 불성실조사 대응 및 허위진술 - 동일조사에서 동일인의 지적 건수가 다수인 경우 - 기타 고의적, 악의적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감사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가중이 필요한 경우
감경대상	- 법 위반의 자발적 인정 및 반성 - 신입(전입)사원 혹은 해당업무 미숙련자의 업무 미숙 - 자율준수노력, 외부 법률상담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위반한 경우 - 조사 전 자율적으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시정한 경우

[별표 3] 인사제재 절차 ->도표화

- 1) 자율 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,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경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조사팀 구성여부를 결정한다.
- 2) 자율 준수 관리자는 조사팀의 조사 활동 결과 보고서에 따라 법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징계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 위원회에 회부하고,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회사 취업 규칙과 인사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..
- 3) 자율 준수 관리자는 제재 조치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법위반 인지(제보 또는 점검) → 사안의 심각성 판단 → 조사팀 구성 및 조사활동 → 결과보고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 → 회사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 → 제재조치 결과 보고